

2005.7.14(木)

檢 討 報 告 書

(第141回 定例會)

遠 城 郡 議 會
專 門 委 員 文 乙 姬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출일자 : 2005. 7.

2. 제출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사유

- '99. 8. 7 초·중등교육법시행령23조의 개정으로 행정구역 상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령대상자는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었으므로 장학금지급대상자를 변경하여 조례를 정비코자 함.

2) 근 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3) 주요내용

- 장학금 대상자 중·고등학생 ⇒ 고등학생(안 제1조)
- 배정비율 중 중학생은 의무교육 대상자이므로 제외 (안 제4조②)

4. 검토보고

- 본조례 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으로 중학생은 의무교육대상자이므로 장학금지급대상에서 제외코자 개정하는 것임.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3조(중학교의무교육대상자)

(개정 '99. 8. 7)

제1항 “교육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령대상자

2~5 : 생략

※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제1항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개정 2005. 3. 24)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출일자 : 2005. 7.
2. 제출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사유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99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세율조정 후 6년동안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여 전국 최저수준으로 과세됨에 따라 징세비용(고지서 제작비용, 우편료, 홍보비, 체납관리비용 등)의 상승 등을 감안하면 지방재정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 자주재원의 확충과 시내 타 구청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율을 적정수준으로 인상 하고자함.

2) 근거

지방세법 제3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3) 주요내용

-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종전 2,000원의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5,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함.(안 제20조)

4. 검토보고

- 본조례개정은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우리군은 전국최저인 2,000 원으로서 징수제비용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지방재정 및 경영 행정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대구시내 타 구청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이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의 세율현실화 계획안에 의한 것임.

※ 주민세 상한금액 : 10,000원

※ 우리군 : 2,000원+200원(교육세 10%) = 2,200원

※ 대구시내 타구청 : 4,800원+1,200원(교육세 25%) = 6,000원

- 금후 인상코자 하는 세액

※ 우리군 : 5,000원+500원(교육세 10%) = 5,500원

※ 대구시내 타구청 : 8,000원+2,000원(교육세 25%) = 10,000원

- 타 시·도, 구·군 비교표 : 별첨

부 칙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 7. 1일부터 적용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출일자 : 2005. 7.

2. 제출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사유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주택의 경우 건물과 부속 토지를 통합하여 과세 하는 등 보유세제가 전면 개편됨과 아울러,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주택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근거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3) 주요내용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명칭을 재산세로 변경하고 감면대상인 건축물과 토지에서 주택을 분리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안 제2조, 안 제4조 내지 제6조, 안 제8조 내지 제9조, 안 제11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내지 제24조, 안 제28조)

- 종전 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전용면적 40㎡이하 (100% 감면)와 60㎡이하(50% 감면)로 구분하여 감면하던 것을, 85㎡(25% 감면)까지 감면을 확대하도록 규정함.
(안 제10조)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당해연도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세액이 소형일반버스의 세액에 미달할 경우 소형일반버스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안 제13조의1)

4. 검토보고

- 본조례 개정안은 제138회 임시회시 의결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행정자치부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임.

- 개정조례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내용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

- 개정조례안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1항 제3호 내용은 현행 임대 공동주택 전용면적 40㎡(12명) 이하에 대하여는 100%, 60㎡(18명)에 대하여는 50% 감면하던 것을, 전용면적 85㎡(25.7명 국민주택기준)에 대하여도 25%를 감면토록 확대하는 것임.

- 개정조례안 제11조, 제13조 내용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어 정비함.

- 개정조례안 제13조의 1(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 제2호 내용은 해당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세액이 소형일반버스세액(65,000원)보다 적을 경우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 개정조례안 제14조~제24조, 제28조 내용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어 정비함.
- 개정조례안 제17조(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내용은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감면 확대하는 것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출일자 : 2005. 7.
2. 제출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사유

-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 되어있는 재난관련 법령을 통합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 재난의 예방·수습·복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3) 주요내용

○ 재난의 정의(안 제2조)

- 자연재난 :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지진·황사·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 인적재난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및 또는 재산의 피해
- 기반재난 :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기간(안 제3조)

- 자연재난대책기간
 - 여름철 : 매년 5. 15 ~ 10.15
 - 겨울철 : 12. 1 ~ 다음 연도 3. 15
- 인적재난대책기간 :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부터 복구 완료시까지
- 기반안전중점대응기간 : 매년 4. 1 ~ 9.30

○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안 제4조)

- 본부장 : 군 수
- 차 장 : 부군수
- 통제관 : 해당 재난업무담당국장
- 담당관 : 해당 재난업무담당과장
- 실무반 : 재난관련업무 담당공무원과 관계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

-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편성·운영 기준(안 제9조)
 - 자연·인적재난은 상시대비체제, 사전대비체제·비상단계의 2단계로 구분 편성·운영
 - 기반재난은 예방, 대비, 대응의 3단계로 구분 구성·운영

- 인력 및 장비동원체제 구축(안 제18조, 제19조)
 -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원활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재난관리 책임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 가능한 인력과 특수 장비 등을 사전 파악·관리

- 재난상황대처에 대한 민·관 협력체제 강화
 - 재난상황과 관련한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지역 주민을 현장모니터 위원으로 위촉(안 제22조)
 - 재난관리상황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를 홍보위원으로 위촉(안 제32조)

4. 검토보고

- 본조례는 다원화 되어있는 재난관련 법령을 통합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2004.3.11 법률제7188호) 됨에 따라 재난의 예방·수습·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 시행상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제136회 임시회(2005.1.21)시 의결된 「달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달성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된 조례임.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항 “해당관할구역 안에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각각 둘 수 있다. 다만, 당해 재난과 관련하여 중앙대책본부를 두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대책본부 또는 시·군·구 대책본부를 두어야 한다”

제2항 “지역대책본부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제3항 “지역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본조례안 제1조(목적)

○ 본조례안 제2조(정의)

1. “자연재난” :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지진·황사·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2. “인적재난”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 시행령2조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3. “자연재난대책기간”

- 하절기 : 매년 5. 15일 ~ 10.15일까지
- 동절기 : 매년 12. 1일 ~ 익년도 3.15일까지

4. “인적재난대책기간” :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 기간
5. “준비단계” : 상시대비체제, 사전대비체제, 기타 이에 준하는 단계
6. “비상단계” :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발령으로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
7. “기반체제” : 에너지, 정보, 통신, 원자력, 식·용수 등 기능이 마비될 경우 인명과 재산,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물적·인적체제
8. “기반재난” :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제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9. “예 방” : 위기요인을 사전에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
10. “대 비” : 국가기반체제가 마비된 상황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대응능력을 강화시키는 일련의 활동
11. “대 응” : 국가기반체제가 마비된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의 가용자원 및 역량을 활용·대처하는 일련의 활동
12. “복 구” : 국가기반체제의 기능을 회복·개선하고 재발방지장치마련, 운영체제 보완하는 등의 일련의 활동
13. “기반보호총괄관” :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지정한 5급상당직
1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 달성군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말함.

- 본조례안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기간)
 -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 본조례 제2조 참조

- 본조례안 제4조(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 및 임무)
 - 본부장 : 달성군수, 재난안전대책본부업무 총괄
 - 차 장 : 부군수, 본부장 보좌
 - 통제관 : 재난업무담당국장, 차장 보좌
 - 담당관 : 재난업무담당과장, 통제관 보좌
 - 종합상황실장 : 재난업무담당, 재난상황실업무담당
 - 재난관련담당공무원,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등 파견된 자로 구성·운영

- 본조례안 제5조(직무대행)
 - 본부장 유고시 차장·통제관·담당관 등 순으로 직무대행

- 본조례안 제6조(위임전결)
 - 별표1, 별표2 참조

- 본조례안 제7조(재난대비체제)
 -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 준비단계와 비상단계 구분
(제2조 5~6호)
 - 기반재난의 경우 : 예방, 대비, 대응, 복구단계 구분
(제2조 9~12호)

- 본조례안 제8조(상황판단회의)
 - 본부장, 차장, 통제관, 종합상황실장, 재난상황실장은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 개최 ⇒ 대처계획 협의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 범위 등 결정
 - 상황판단회의 ⇒ 재난관련부서장, 관계기관업무담당자로 구성, 필요시 외부전문가 참석

- 본조례안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 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 경우 ⇒ 규정에 의한 실무반 편성·운영 ⇒ 별표3, 4 참조
 - 기반재난 경우 예방·대비·대응·복구를 고려 ⇒ 실무반 편성·운영 ⇒ 별표5, 6, 7 참조
 - 본부장은 실무반의 편성을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직원파견 요청 ⇒ 파견근무대상자 명단 즉시 제출
 - 명단을 제출받은 본부장은 실무반을 편성 ⇒ 과정별로 인원 산정 후 소집 근무토록 하여야 함.
 - 본부장은 편성된 실무반원을 소집 ⇒ 재난상황 대응 모의훈련 실시

- 본조례안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 본부장은 실무반에 파견될 직원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사전 교육 시킬 수 있음 ⇒ 관계기관의 장은 사전교육을 받은 자를 파견하여야 함.

- 본조례안 제11조(근무자의 복무)
 -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파견된 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본부장은 파견된 근무자 중 불성실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속 기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 할 수 있음.

- 본조례안 제12조(재난본부장의 현장상황관리체제)
 - 본부장은 재난발생현장 상황의 관리가 필요할 시 현장 접근이 쉬운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
 - 위 설치시 수습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운영

-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위의 비상지원본부에 필요한 반을 둘 수 있음.
 - 비상본부책임자는 소방서에 설치되어 있는 긴급구조통제단장과 협조하여야 함.
 - 자연·인적재난 발생시 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서)이 총괄 지휘함.
- 본조례안 제13조(현장상황지원관의 운영)
- 본부장은 재난대책본부 소속직원을 현장상황지원관으로 임명,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음.
- 본조례안 제14조(통합지원의 요청 등)
- 본부장은 기반재난에 대하여 책임 대응 하여야 함.
 - 통합지원이 필요한 경우 ⇒ 국가기반대책본부 또는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지원 요청
- 본조례안 제15조(지원팀의 구성 및 임무)
- 안 제13조에 의한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관련업무 담당관계자 및 전문가들로 지원팀을 구성,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음.
 - 위 지원팀은 재난현장에서의 활동지원 및 대구광역시 수습지원 팀에 소속 ⇒ 재난수습을 지원하여야 함.
- 본조례안 제16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련단체의 협조체제 등)
- 본부장은 재난상황관리상 각 구호기관 및 관련 단체·관계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 위 관련기관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 연결망을 구축

- 본조례안 제17조(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합동훈련)
 - 본부장은 제16조 규정에 의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합동훈련을 실시
 - 합동훈련은 도상훈련·전산훈련·실제훈련으로 구분 실시, 훈련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함.

- 본조례안 제18조(인력 및 장비동원체제 구축 등)
 - 본부장은 재난발생에 대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장비 중 동원 가능한 인력, 특수장비에 대한 현황 파악·관리
 - 본부장은 위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 응급복구를 위한 동원체제 구축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간에 필요한 자료, 정보를 공유 토록 지원

- 본조례안 제19조(기반재난관련 자원동원 체계구축 등)
 - 본부장은 관할구역안의 관계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업체의 장과 협의, 재난발생시 응급조치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사전 파악,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본부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인력 및 장비현황을 제출 요청, 각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함.

- 본조례안 제20조(비상연락망 구축 등)
 - 지역재난관리책임의 장은 제10조에 의한 교육 이수한 상황근무 대상자가 소집에 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 구축

- 본조례안 제21조(상황단계별 편람 작성 등)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응용편람을 작성
 - 위 편람 작성시 해당기관 관장업무에 따른 개인별 행동편람을 별도 작성

- 본부장은 위 내용에 의한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편람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편람을 작성
 - 위 내용과 같이 작성한 편람의 개선·보완을 위하여 과거 발생한 재난사례 자료를 조사, 취합·관리 필요한 경우 재난 관련 전문가에게 가상 시나리오 작성 의뢰.
- 본조례안 제22조(현장모니터위원 등)
- 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지역주민 등을 모니터 위원으로 위촉, 이경우 소정의 수당 등을 지급
- 본조례안 제23조(자연 및 인적재난상황 보고요령)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인적 재난발생 또는 우려가 있는 경우, 군수·광역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 또는 통보
- 본조례안 제24조(재난상황 전파체계 등)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기반재난 발생우려 또는 발생시 재난상황실 또는 기반재난 담당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
 - 통보를 받은 장은 시 재난상황실 보고, 유관기관 전파
- 본조례안 제25조(재난상황보고 또는 통보요령)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단계별로 재난상황실 및 기반 재난담당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
- 본조례안 제26조(기반보호총괄관의 지정·임무)
- 군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신속한 재난정보의 전파를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기반보호 총괄관을 지정

- 기반보호 총괄관의 업무
 - 기반재난유형별 담당부서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 기반재난담당자와 대구시 담당요원 간 연계업무총괄
 - 「달성군재난안전관리위원회」상정 등 업무총괄
 - 지역대책본부구성·운영에 관한 업무총괄

- 본조례안 제27조(예방단계의 상황관리)
 - 제2조 제9호 “예방”
 - 기반재난담당부서는 전담요원 지정, 정보 수집·분석
 - ⇒ 사전징후 포착 노력

- 본조례안 제28조(대비단계의 상황관리)
 - 제2조 제10호 “대비”
 - 본부장은 비상근무조 투입, 사태발전가능성 분석
 - ⇒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전파

- 본조례안 제29조(대응단계의 상황관리)
 - 제2조 제11호 “대응”
 - 본부장은 대규모 재난발생으로 국가기반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관계자 추가 투입 ⇒ 피해상황 및 사태해결 상황분석·전파
 - 대규모 재난 경우, 소속공무원 현장 파견 ⇒ 현장 상황실 설치

- 본조례안 제30조(복구단계의 상황관리)
 - 제2조 제12호 “복구”
 - 본부장은 기능정상화 여부·피해상황·복구계획서 작성 보고
 - 관계기관과 복구계획, 재발방지대책협의·조치

- 본조례안 제31조(재난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
 - 본부장은 합동훈련 실시 후 평가실시 ⇒ 결과를 지역재난 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 ⇒ 통보를 받은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본부장은 우수한 지역재난관리책임 수행기관을 선정 포상

- 본조례안 제32조(재난상황 홍보 등)
 - 군민들에게 재난상황 등 홍보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
 - 위촉시 예산범위내에서 수당 지급

부 칙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현행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
- 현행 조례에 의한 각종 처분·조치 등 행위는 본조례에 의한 행위로 봄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출일자 : 2005. 7.

2. 제출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사유

- 자연재해대책법,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영되어 온 재해 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되어
- 동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제정코자 함.

2)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3) 주요내용

- 기금의 조성(안 제2조)
 -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1
 - 기금의 운용수입
 - 기타 잡수입 등

- 기금의 용도(안 제6조)
 -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등
 -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 재난관련 장비 구입

- 기금의 회계공무원(안 제8조)
 - 기금운용관 : 건설도시국장
 -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담당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

-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안 제9조)
 -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

4. 검토보고

- 본조례는 개별법에 의하여 각각 운영하여 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일원화되어,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이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본조례안 제1조(목적)
- 본조례안 제2조(기금의 조성)
 - 적립금, 운용수입, 잡수입 등
- 본조례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 ⇒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 예금 예치·관리
 - 나머지 금액 + 이자 ⇒ 당해연도 사용, 별도 운용·관리
- 본조례안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 장기예치기금액은 지정금고(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관리

- 본조례안 제5조(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은 지정금고에 관리
 - 사용잔액 + 이자 ⇒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 운용·관리
- 본조례안 제6조(기금의 용도) : 별첨
- 본조례안 제7조(기금의 회계관리)
 - 기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은 세계현금의 예에 준함.
- 본조례안 제8조(회계공무원)
 - 기금운용관 : 건설도시국장
 -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담당
 - 세입세출대장 비치, 증빙서류 등 따로 관리
- 본조례안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수립
 -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결산보고서 작성
 - 기금운용계획서, 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
- 본조례안 제10조(시행규칙)

부 칙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현행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산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는 폐지하고, 현행 조례에 의한 운영기금은 본조례 기금으로 본다.

(별첨)

기금의 용도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1.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2.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3.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것에 한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4.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5. 재난원인분석 및 침수흔적조사, 침수흔적도 작성·보존 등의 사업
6.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용자
7.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제20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1.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 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2.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을 제외한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 관거의 정비사업

3.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배수장, 보, 용수로·배수로 및 방조제의 정비사업
4. 영 제32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의 정비사업
5.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사업
6.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7.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8.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대책사업